제품 납품 계약서

제1조 (당사자)

제품 생산의뢰업체 주식회사 000 (이하 "갑")과 제품 생산업체 주식회사 000 (이하 "을")은 다음과 같이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계약은 갑이 주문하는 제품을 을이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반 관련사항을 규율함에 있다.

제3조 (납품 제품)

- ①갑이 주문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품 명:
- 2. 사 양:
- 3. 단 가:
- ②본 조 제1항의 주문 제품은 별도의 발주서 기재사항으로 의거하며, 추후에는 해당 발주서에 대해 본 계약이 적용된다.

제4조 (자재 공급)

- ①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은 을이 담당한다.
- ②제품의 명칭 및 제작처 표시는 갑의 명의로 하며 관련 포장지 및 라벨은 갑이 공급한다.

제5조 (상표 사용)

- ①을은 갑이 의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의 상표 및 상호를 부착하여야 하며, 기타 제품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 될 시에는 을은 본 조 제1항의 표지를 모두 갑에게 반납하거나, 갑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.

제6조 (샘플)

- ①을은 제품의 양산에 앞서서 사전에 갑이 제시한 생산지시서에 의거한 샘플을 제작하여야 한다.
- ②갑이 샘플에 대해 양산 승인을 한 경우에 을은 제품의 양산에 착수하며, 샘플 승인이되지 아니할 시에 갑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샘플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.

제7조 (검수)

- ①을은 양산품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기관의 검수확인을 받는다.
- ②본 조 제1항의 검수결과 정상출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정상판정을 내려서 납품으로 인정하며, 불합격 제품은 제7조에 따른다.
- ③본 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통지가 없을 시 검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
제8조 (검수 불합격)

- ①검수 불합격 제품은 불량상태가 경미한 것(+급)과, 불량상태가 심한 것(-급)으로 분류한다.
- ②+급은 갑이 계약단가의 00%로 인수가 가능하며, 갑이 인수를 하지 아니할 시 을이 갑의 상표 등의 표지를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갑의 제품판매 가격보다 00%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-급 제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을 하여야 하며 본 조 제2항과 같은 판매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- ④을이 본 조를 위반 시에는 유출된 양의 정상 판매가격의 00%를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미유출 잔여분은 전량 갑에게 무상 귀속하기로 한다.
- ⑤본 조 제4항의 경우 갑의 상표, 상호 또는 라벨 등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시중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정상 판매가격의 00%를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.

제9조 (납품)

- ①을은 제7조 및 제8조 제2항의 제품에 대하여 납품 기일을 준수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.
- ②제품의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의 배상요구의 우려가 있는 경우, 을의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갑에게 손실이 예상될 경우 을이 책임을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갑은 하자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 (대금결제)

- ①갑은 제9조상의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1개월 납품물량을 산출하여 익월 30일에 을의 은행계좌로 현금입금 한다.
- ②을은 본 조 제1항의 1개월분 납품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익월 5일까지 을의 경리팀에 발송하여야 한다.

제11조 (납품 불이행)

- ①을의 납품수량이 계약수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한 납품가격의 00%를 손해배상으로 갑에게 지급한다.
- ②을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1일당 납품 가액의 00%를 배상하며 30일이상 지연시는 1일 단위로 위 지연배상율을 두배로 적용한다.
- ③갑은 본 조의 사유발생 시 익월의 결제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갑의 사전 서면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 (담보)

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계약 이행 및 을이 생산, 공급한 제품 또는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, 기타 예상되는 모든 손실에 대비한 담보로서 근저당, 신용보증서 기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3조 (양도금지)

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품의 제작을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없으며,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.

제14조 (비밀유지)

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상 취득한 상대방의 기업정보 및 디자인 기타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.

제15조 (유효기간)

- ①본 계약은 00년 00월 00일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, 종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②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되더라도 본 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등 채무이행이 존재할 시에는 해당 범위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.

제16조 (분쟁해결)

-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.
- ②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.

제17조 (특약사항)

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,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.

(1)

(2)

제18조 (기타사항)

- ①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.
- ③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,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갑	주소		
	상호명	대표자명	(인)
일	주소		
	상호명	대표자명	(인)